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69

발의연월일 : 2021. 1. 19.

발 의 자 : 홍기원·강준현·고영인

기동민 · 김성주 · 민형배

박상혁 · 양정숙 · 윤준병

이규민 • 이수진 • 진선미

홍정민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이하 "점검자"라 한다)로부터 해당 차량을 점검 받아 그 결과를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자동차매매업자와 점검자는 해당 점검결과를 직접 보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검자의 보증책임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점검자는 점검 결과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고자동차 매매 시 점검자의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하여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중고자동차 시장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2019년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4%가 중고차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차량상태 불신(49.4%)을 가장 많이 지적하기도 하였음.

이에, 점검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자 함.

아울러,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는 다수의 점검장을 보 유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점검장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단 체가 소속 점검장이 소재한 관할관청에 신고기준을 갖추어 자동차성 능·상태점검업무를 신고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소속 점검장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점검장별로 행정처분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친환경차의 수요 증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점검 자는 점검내용을 기록·관리 및 보존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전 산정보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2곳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로 신고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각각 신고하도록 규정함 (안 제58조제2항).
- 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그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58조제7항, 제80조제9호의2, 제84조제4항제22호의2

- · 제22호의3 신설 등).
- 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도입하고일부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절차를 규정함(안 제66조제5항 신설 등).
- 라. 자동차관리 업무와 관련한 보고·검사 대상에 자동차성능·상태점 검자를 추가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수 있 도록 함(안 제72조제16호, 제73조제4호 신설).
- 마. 현행의 자동차관리사업 관련한 업무 수행에 따른 필수적 기록·관리 및 보존과 그 내용 중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의무적으로 전송 하여야 하는 책임을 자동차관리사업자 뿐만 아니라 자동차성능·상 태점검자에게도 부여함(안 제58조제9항 및 제10항).
- 바. 중고차 매매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자의 행위내용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함(안 제80조제7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 제목 중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제4항 및 제5항"을 "제4항, 제5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 이 경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2곳 이상인 때에는 사업장별로 전단의 기준을 갖추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 ⑦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점검을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
 ·상태점검의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것
- 2. 거짓으로 성능·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점

검 내용을 제공하지 말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동차성능·상 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법률 제16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의3제1항 후단 중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라한다)"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로 한다.

제66조제1항제8호 중 "제58조제7항"을 "제58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 및 제4항"을 "제2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하여사업장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장별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 2.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 3. 제58조제7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58조제8항을 위반하여 기록・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상태점검의 내용에 대하여 보

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 능·상태점검을 한 경우

제72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제7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 검을 하는 경우

법률 제16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5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

제80조제7호 중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를 "점검한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58조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성능·상태점검을 하 거나 실제와 다른 점검 내용을 제공한 자

법률 제16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4항에 제22호의2 및 제2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7호의2 중 "제58조제8항"을 "제58조제9항"으로 한다.

22의2. 제58조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성능·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하지 않거나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2의3. 제58조제7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성능

• 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이 2곳 이상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성능·성능상태점검을 하고 있는 자의 사업 장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8조제 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같은 조 같은 항 전단의 기준을 갖추어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생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략) (현행과 같음) ②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 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자격기 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 -----. 이 경우 자 <u>단</u> 신설> 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2곳 이상인 때에 는 사업장별로 전단의 기준을 갖추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 고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을 하는 자(이하 "자 동차성능・상태점검자"라 한 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 수하여야 한다. 1. 점검을 의뢰한 자에게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상태점검의 내용

①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⑧ 자동차관리사업자는 <u>제7항</u>에 따라 기록·관리 및 보존하는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 (점검 | 장면을 | 촬영한 | 사진을 |
|------------|--------|------|-------|
| 포함한 | 나다)을 기 | 세공하고 | , 그 사 |
| <u>실을</u> | 증명하는 | 는 서류 | 를 발급 |
| <u>할 것</u> | | | |

- 2. 거짓으로 성능・상태점검을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다른 점검 내용을 제공하지말 것
-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에 관한 교육 을 이수할 것

⑧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성

| <u>능·상태점검자를 포함한다. ㅇ</u> |
|-------------------------|
| <u>하 이 조에서 같다)</u> |
| 제4항, 제5항 및 제7항 |
| |
| |
| |
| . |
| <u>⑨</u> <u>제8항</u> |
| |
| |
| |

송하여야 한다. 법률 제16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 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 제58 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 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 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성능・상 태점검자"라 한다)가 자동차매 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 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시 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 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 법률 제16950호 자동차관리법 | | |
|-------------------------------------|--|--|
| 일부개정법률 | | |
|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 | |
| 손해배상책임)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 ② ~ ④ (연행과 숱듬)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 | |
| | | |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있다. 다만, 제1호, 제15호 또는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7. (생략)
- 8. <u>제58조제7항</u>을 위반하여 기록·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 니한 경우
- 9. ~ 16. (생략)
- ② ~ ④ (생 략)

<신 설>

| ,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
| 8. <u>제58조제8항</u> |
| |
| |

- 9. ~ 16.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 차성능·상태점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자에 대하여 사업장의 폐쇄 또 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사업장별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 ⑤ 제1항, <u>제2항 및 제4항</u>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72조(보고·검사) ① 국토교통 제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관리업무를 위하

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 2.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경영한 경우
- 3. 제58조제7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58조제8항을 위반하여 기 록·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 니한 경우
- 5.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상태점검의 내용에 대 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6.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한 경우

| <u>6</u> | | - <u>제2항,</u> | 제4항 | 및 | 제5 |
|----------|------|---------------|-----|-------|----|
| 항- | | | | | |
| | | | | | |
| | | | | _ | |
| 722 | 조(보고 | • 검사) | ① | · | |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 15. (생 략) <u><신 설></u>

② ~ ④ (생 략)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 지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게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확인이나 그밖의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 설>

② ~ ④ (생 략) 법률 제16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 저

| 1. ~ 15. (현행과 같음) |
|--------------------|
| 16.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세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 |
| 치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
| 4.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 |
| 고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 |
| • 상태점검을 하는 경우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법률 제16950호 자동차관리법 |
| 일부개정법률 |
| 세75조(청문) |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 을 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신 설>

7. (생략)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 6. (생략)
- 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 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 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 거나 고지한 자 또는 압류・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 으로 고지한 자

7의2. ~ 9. (생 략) <신 설>

10. (생략) 법률 제16950호 자동차관리법 | 법률 제16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1. ~ 6. (현행과 같음) |
|-----------------------|
| 6의2.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 |
| 장의 폐쇄 |
| 7. (현행과 같음) |
| 제80조(벌칙)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
| 7 |
| 1. |
| |
| <u>점검한 내용</u> |
| |
| |
| |
| 7의2. ~ 9. (현행과 같음) |
| 9의2. 제58조제7항제2호를 위반 |
| <u>하여 거짓으로 성능·상태점</u> |
| 검을 하거나 실제와 다른 점 |
| 검 내용을 제공한 자 |
| 10. (현행과 같음) |
| 버르 게16050ㅎ 기도키고기버 |

일부개정법률

| 제84조(과태료) ① ~ ③ (생 | 제84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
|----------------------------|-----------------------------|
| 략) | 같음) |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4 |
|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 |
|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1. ~ 22. (생 략) | 1. ~ 22.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u>22</u> 의2. 제58조제7항제1호를 위 |
| | <u>반하여 성능·상태점검의 내</u> |
| | 용을 제공하지 않거나 그 사 |
| | 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 |
| | 지 아니한 자 |
| <u><신 설></u> | <u>2</u> 2의3. 제58조제7항제3호를 위 |
| |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 |
| | 동차성능・상태점검에 관한 |
| |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 23. • 24. (생 략) | 23.•24. (현행과 같음) |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5 |
|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 | |
|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7의2. 제8조제3항 또는 <u>제58조</u> | 7의2 <u>제58</u> 조 |
| <u>제8항</u> 을 위반하여 전산정보 | <u>제9항</u> |
| 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아니한 | |
| 자 | |
| | |

8. • 9.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8. • 9. (생략)

⑥ (생 략)